##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9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남인순·전진숙·윤종군

김남희 • 박희승 • 백승아

김현정 • 이재관 • 김성회

정동영 · 이수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역당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 나.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

부 한도를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의 관할 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때에는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 (안 제28조제2항).
- 마.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15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당

제11조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역당후원회

제1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당후원회는 5천만원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중앙당후원회"를 각각 "중앙당후 원회·지역당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지역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도당에"를 "시·도당에,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 당에"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역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을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시·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를 "시·도당, 지역당 및 정당선거사무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	
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의2. 지역당</u>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2
연간(대통령후보자등 • 대통령	
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	
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	
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	
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	3
각 200만원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u> 설>

4. (생략)

③ ~ ⑥ (생 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 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 · 예금계좌 · 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 1. (생략)

<신 설>

- 2. ~ 6.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

다. 지역당후원회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지역당후원회는 5천만원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п · п /

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 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 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u>중앙</u>
   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
-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
  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
  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
  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 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u>중앙</u>

  <u>당후원회</u>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

  구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

## ② (생 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저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 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

1	
<u>중</u>	앙
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2	
<u>중</u>	앙
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3	
<u>중</u>	앙
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세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 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 1. 후원회지정권자가 <u>중앙당(중</u> <u>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u> 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 2. (생략)
- ② ~ ⑦ (생 략)
-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 략)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 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1중앙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
<u> 함한다) • 지역당</u>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2
2] TTAN 100
<u>시·도당에, 100</u> 브이 10 이사의 기여다에
<u>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 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 다.

- 1. ~ 4. (생 략)
-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 <sup>7</sup> 략)

-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 2. (생략)
-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 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

1. ~ 4. (현행과 같음)
5
H Z 그 이 오베세 사다ᅱ
<u>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u> 느 그래 기여다이 겨우 즉아
는 금액, 지역당의 경우 중앙 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
<u>다), 시·도당 및 지역당</u>
③

( <u>시·도당</u> 의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때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④ (생 략)
-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 기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 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정당의 회계책임자
    -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 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u>시·도당</u>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 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

<u>시·노당 및 지역당</u>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1
가
시·도당 및
<u>지역당</u>
나

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 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 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 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 도 2월 15일(시·도당은 1 월 31일)까지

-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 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 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 목에 의하고, 당해 <u>시·도</u> 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 목에 의한다.
- 2. ~ 5. (생략) ② ~ ⑥ (생 략)

<u>시·도당 및</u>
<u>지역당</u>
다
<u>시·도</u>
<u>당, 지역당 및 정당선거사</u>
<u>무소</u>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